

치매공공후견사업



지원대상

- 치매환자이면서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
 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자 등 저소득자 및 기초연금수급자
 -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경우
 - 후견인의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자

※ 단,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한 경우 지원 가능



지원내용

- 후견심판청구 절차 및 비용 지원
 - 공공후견인 활동비 지원
 - : 월 20만 원(월 최대 40만 원)
- ※ 본 사업은 특정후건을 원칙으로 함



신청방법

- 치매어르신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문의 (치매상담콜센터 연락처: 1899-9988)



만일 치매에 걸렸는데...
주변에 가족이 아무도 없다면 나의 경제적,
법적 권리는 누가 책임져 줄 수 있을까?



걱정하지 마세요!
이제 치매공공후견사업이 홀로 계시는
치매어르신께 후견인 선임을 지원합니다!!

치매공공후견 상담문의는
1899-9988
치매상담콜센터로!

치매 공공후견 사업안내



치매공공후견사업이란?

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어르신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.

후견심판청구 절차, 후견인 연계, 후견활동 관리 등 공공 후견인 신청 과정 및 관련 비용을 지원합니다.

• 관련 근거: 치매관리법 제12조의3, 민법 등

치매관리법 제12조의3(성년후견제 이용지원)

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매환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「민법」에 따라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,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.

1. 일상생활에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매우 부족하여 의사결정의 대리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
2. 치매환자의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
3.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권리침해의 위험이 상당한 경우

성년후견제도

장애, 질병,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 등 관련 사무를 지원하는 제도

치매공공후견 사업 지원 사례

후견 사례 1

지역사회 거주 치매어르신

임대주택에 홀로 사시는 치매어르신입니다.

매달 어르신의 개인 통장으로 기초생활수급비 및 기초연금 등의 수익이 들어오나 금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, 또한 폐렴 등의 지병이 있어 정기적 병원 검진을 받아야하나 진료 예약 등의 절차를 혼자 진행하기가 어려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

후견인 선임을 통해 어르신의 개인 통장으로 들어오는 수급비 등의 예금자산 관리를 도와드리고 있고, 매달 정기적 병원 검진을 예약해 적절한 진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

후견 사례 2

요양시설 입소 치매어르신

요양시설에 입소해서 지내시는 치매어르신입니다.

시설에서 치매어르신에게 건강 상태에 맞는 적절한 치료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, 정기적인 시설입소비용 납부 등 지출관리에 대해 어르신 혼자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.

견인 선임을 통해 입소 시설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각종서비스를 요청하고, 기본적인 재산관리를 통해 시설비용 납부와 필요한 일상 용품 구입 등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.

치매공공후견서비스 이용절차

- 01

공공후견서비스 신청

주민센터, 요양시설 등에서 치매노인을 발굴하여 치매안심센터로 신청합니다.
- 02

후견대상자 선정

치매안심센터는 사례회의를 통해 치매공공 후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광역치매센터에 적합한 후견인 후보자 추천을 요청합니다.
- 03

후견심판청구 준비

치매안심센터는 후견심판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, 중앙치매센터 소속변호사는 관련자료 검토 후 청구서를 작성합니다.
- 04

후견심판청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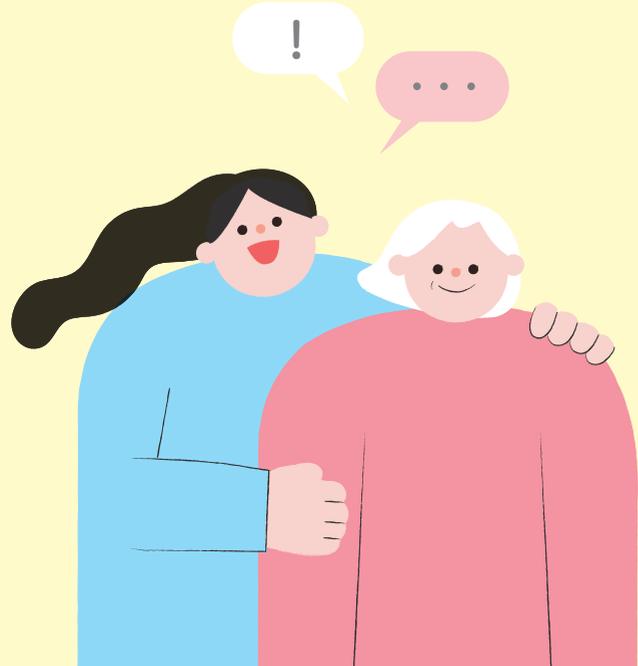
중앙치매센터 소속변호사는 지자체장 으로부터 위임받아 치매노인 주소지 (가정)법원에 후견심판청구서를 접수합니다.
- 05

후견심판결정

(가정)법원은 후견심판청구를 심리하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결정을 내립니다.
- 06

후견활동 시작

공공후견인은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활동하며, 치매안심센터 및 법원의 관리감독을 받습니다.



공공후견인 Q&A

- ### Q1 공공후견인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?

법원의 결정에 따라 업무범위가 다르나, 보통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.

 - 통장 등 재산관리
 - 관공서 등 서류 발급
 - 복지서비스 신청 대리
 - 병원 진료, 약 처방 등 의료서비스 이용 동의(수술 및 시술 등 건강에 영향을 주는 침습적 의료행위 제외)
 - 물건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 지원
- ### Q2 누가 공공후견인이 될 수 있나요?

 - #### • 공공후견인 자격

미성년자, 파산선고 받은 자, 형(刑) 집행 중인 자 등 민법상 결격사유(민법 제937조 참조)가 없고, 후견인 후보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성인이라면 누구나 공공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.
 - #### • 공공후견인 선정 절차

공공후견인 모집 및 관리는 광역치매센터에서 담당하며, 세부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.

 - ① 시도 광역치매센터에 지역 내 후견인 후보자 모집 및 선발
 - ② 치매공공후견인 양성교육 수료 후 위촉장 수여
 - ③ 치매안심센터에서 요청 시, 후견대상자와 적합한 후견인 후보자 추천
 - ④ 치매안심센터는 후견인 선정회의를 통해 후견인 결정
 - ⑤ 후견심판청구 절차 진행